

<2007년 국회사무처 8급 행정법 기출>

01.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.
-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.
-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.
-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담에 해당한다.
-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.

02.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
- ② 행정상 확약
- ③ 행정계획의 변경
- ④ 공법상 계약
-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

03.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.
-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.
-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.
-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,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.
-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.

1. 해설)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, 적어도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⑤와 같이 말하기는 곤란하다. 답 ⑤

2. 해설)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으로 종래 ①②③④ 등이 열거되어 온 것과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한계에 관하여는 주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들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, 답은 ⑤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. 다만,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면 출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. 답 ⑤

3. 해설) ②의 경우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동의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가 되어 그를 거치지 않았을 때 행정행위의 하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, 그렇다고 하여 다른 행정청의 동의 그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. 답 ②

04. 다음 중 행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 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
-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·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.
-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.
-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,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05.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
-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,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·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.
-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-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·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판례에 따르면 인·허가 의제시에는 주된 인·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.

06.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판례에 따르면,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이 적용된다고 본다.
-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.
-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.
-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.
-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07. 다음 중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.
-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.
-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-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4. 해설) 실정법이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직접 부과·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

13. 다음 중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?

- ① 대집행의 실행행위
- ②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
- ③ 국세체납절차에서의 재산압류행위
- ④ 무허가 건물의 철거
- ⑤ 관용차의 운전

11. 해설) 우리나라의 헌법은 「명령·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」고 규정함으로써(제107조 제2항)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따라서 법규명령은 그의 위헌·위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 다루어 질 뿐이며, 법규명령의 효력을 독립하여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답 ②
12. 해설) 일단 (나)(다)(라)는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설명이다. 한편 (가)의 경우 허가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이 예외적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, '예외없이 등의' 표현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다. 답 ④
13. 해설) 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독립적 사실행위로서 답이 된다. 답 ⑤

14.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, 보통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.
- ② 대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.
- ③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수리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.
- ④ 우리 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'수리를 요하는 신고'를 말한다.
-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,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.

15. 우리 공무원제도상의 권익의 보장과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고르시오.

- (가)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·휴직·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·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나)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소청이라 하며, 이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.
- (다) 소청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하되, 훈계, 권고, 내부적 결정과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.
- (라)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며, 이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.
- (마)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.

